

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
[] 기초생활 수급자 [] 차상위계층 [] 그 외 지원대상자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하고,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(연장 시 60일)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환자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		
	주소	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				
	의료기관명	질병·부상명	질병분류기호	입원기간	진료 구분	[] 입원 [] 외래 [] 약국
대리인	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			
	유형	[] 가족 [] 친족 [] 이해관계인(환자와의 관계:) []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[] 사회복지전담공무원				

지급 계좌	환자와의 관계	예금주 성명	금융기관명	계좌번호	해당사항에 체크 일반통장[] 압류방지통장[]

정보수신 여부	[] 동의 [] 동의하지 않음	수신 방법	[] 문자메시지 [] 전자우편(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진료비 내역						
진료비총액	환자부담금총액	급여			비급여	
		본인부담금 총액	공단부담금 총액	전액본인부담금 총액	선택진료료 총액	선택진료료 이외 총액

※ 진료비 영수증의 각 항목 총액을 적습니다.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 각 항목의 총 합산금액을 적습니다.

고지 사항	1. 민간보험 가입·지급 여부	[] 없음 [] 있음 (금액: 시기:)
	2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 지원 여부	[] 없음 [] 있음 (금액: 시기:)
	3. 위험분담약제 사용여부	[] 없음 [] 있음 (약제명: 환급금액:)

※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은 국가·지방자치단체나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급여·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되며,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.

※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으로 대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

(뒤쪽)

첨부서류	1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2. 진단서, 입·퇴원 확인서 등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 등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3.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동의에 관한 서류 4. 예금통장 사본 등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계좌로의 입금 등에 필요한 서류 5. 진료비·약제비 영수증 등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서류 6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명세를 증명하는 서류 등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및 같은 영 제12조에 따른 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
담당 직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 등본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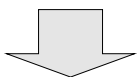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최종 진료일(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합니다)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지원금액이 지급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며,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.
- 정당한 이유 없이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-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재난적의료비 지원 개념

급여		
일부본인부담		② 전액본인부담금
① 본인부담금	공단부담금	



※ ① 본인부담 지원대상 항목

- 선별급여
- 병원 2·3인실 입원료
- 노인틀니(의료급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

③ 비급여

④ 지급 제외 항목

- 미용·성형,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,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은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
-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·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
-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·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

※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:

{① 본인부담금(지원대상 항목) + ② 전액본인부담금 + ③ 비급여 - ④ 지급 제외 항목} × 50~80%

*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